

이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·면·동 위임 조례

소관부서 : 민원여권과

제정 1996·3·1 조례 제 32호
개정 1996·4·27 조례 제142호
개정 2004·11·24 조례 제508호
(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)
개정 2004·12·13 조례 제518호
개정 2010·3·23 조례 제824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민등록법」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(이하 “읍·면·동장”이라 한다)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한다. 다만,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,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 교부 권한은 시장 및 읍·면·동장으로 한다. <개정 1996·4·27, 2004·12·13, 2010·3·23>

1. 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
2.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해 사항
3. 삭제 <2010·3·23>
4. 삭제 <2004·12·13>

제3조(지휘·감독)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,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·면·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·면·동 위임 조례

부칙 <1996·4·27 조례 제14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4·11·24 조례 제508호,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
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4·12·13 조례 제51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·3·23 조례 제82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